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6. 12
 발 의 자 : 옥영복의원의외 6인

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,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하구청장이 제출하는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유도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성위원정수 : 7명
- 나. 위원선임 :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다.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: 총무위원회 4명, 도시위원회 3명
- 라. 활동기간 : 제158회 제1차 정례회

4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
- 나.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